제768회 신설·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법무부)	1.공익법인의 인정 등(신설)○(공익법인 인정)「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은 위원회에 공익법인의 인정을 신정할 수 있고, 위원회는 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으로 인정함○(명칭 사용 금지)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이 아닌 자는 공익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공익법인 인정 취소)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가 공익법인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음2.공익법인의 감독 등(강화)○(공익법인의 감독 등) 공익법인의 사무를 위원회가 관리. 감독○(시정명령 등) 공익법인의 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법인법 또는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등의 경우 위원회가 시정명령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임을 명할 수 있음○(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위원회는 시정명령 기간 중 해당 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공익법인의 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음○(예산 및 결산 등) 공익법인 예산 및 결산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은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3.기부금품의 모집(신설)○ 공익법인이 기부금품	1.비중요 2.비중요3.비중요4.비중요5.비중요6.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을 모집할 때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등록의무 면제4.임원 결격사유 등(강화)○(임원 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음○(임원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 누구든지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5.사원총회의 결의사항(신설)현행 「민법」에서는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및 해산은 이사회의 권한이 아닌 사원총회의 권한으로 하고 있어, 사단법인인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사단법인인 공익법인의 경우 정관의 변경과 공익법인의 해산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함6.공익법인의 합병(신설)○(합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따른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는데, 사단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과 함께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합병의 등기) 공익법인이 합병을 한 때에는 3주 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	
2	(환경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안	1.외부사업 인증 유효기간 설정(신설) < KOC 보유를 KCU로 전환하여 보유 >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환경부)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을 인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상쇄배출권(KAU)으로 전환하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 인증된 실적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도록 기한을 유예함 또한 감축실적의 검증보고서 제출기한이 旣 설정되어 있으나, 제출하지 않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감축량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인증신청을 유예함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1.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의무 강화(강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지도 규제지역 등에 적용되는 계약 취소주택의 재공급 시기,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적용받을 있도록 추가 2.전매행위 위반자 입주자 자격 제한(신설)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 제한 3.사업주체의 입주예정일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설정의무(신설) ㅇ 사업주체는 제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 상의 입주예정일을 감안하여,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그 사실을 제59조에 따른 계약자에게 통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보 ㅇ 사업주체는 원활한 입주를 위하여 입주시작이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상의 입주지정 기간을 설정. 다만, 300호 또는 3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45일 이상으로 설정	
4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개정안 (소방청)	1.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일부개정고시안(강화) 1. 하나의 직선배관에 최소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개수를 정함(제9조) 2.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에 따른 영향구역의 최대허용하중 기준을 마련함(제10조) 3. 가지배관 고정장치의 최대 설치간격 및 와이어, 환봉 등 고정장치별 설치기준을 마련함(제13조)	1.비중요
5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부정성적서 유통 차단 조치 의무화(신설) 부정성적서 유통 차단을 위해 부정성적서 무효 사실 확인, 적합성평가 의뢰자에게 통보 등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의 의무 조치사항 규정 2.공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신설) 공인기관 인정 취소,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명령,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의 기준 제시 3.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신설)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지정 취소,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시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4.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유효기간 설정 및 행정처분 기준(신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유효기간 설정(4년) 및 지정취소,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시	
6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과태료 부과 대상 오류 성적서 범위 규정(신설) 과태료 부과 대상 오류 성적서를 '시험항목의 누락', '측정기준의 오적용' 등 오류로 인해 적합. 부적합 등 평가결과가 변경된 성적서로 규정함 2.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지정기준(신설)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기준으로 인정업무 관련 독립성, 수행인력 확보, 산업통상잔원부 고시인 인정기구 요건 등을 갖출 것을 규정함	1.비중요 2.비중요
7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신설) -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ITU Radio Regulations)은 193개국이 따르도록 한 국제규정으로써 '21년 1월부터 효력이 발효되는 불요발사 규정 반영 - 국내 산업계에서 제기된 측정 허용편차 등 완화된 국제민간사실표준(3GPP) 5G기술규격을 반영하여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이동통신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8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금융감독원)	1.상호금융조합의 여신심사기준 마련(신설) 감독규정 개정안에서 위임하고 있는 상호금융조합의 여신심사기준 운영 및 기준에 포함될 사항*을 명시 * 신용평가시스템 등에 의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여신심사 및 승인, 담보대출 취급기준, 여신업무내부기준 등 2.신협 후순위차입금 보완자본 인정한도 마련(신설) 타 금융업권과의 규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협의 후순위차입금 보완자본 인정한도 설정(만기 5년 이상의 경우 기본자본의 50%) 및 잔존만기를 고려한 한도 차감(만기 5년 이내시 매년 20%씩 차감)	1.비중요 2.비중요
9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금융감독원)	1.제3의료기관을 통한 자문의뢰 절차 등에 대한 설명 의무 및 의료자문 관련 비교·공시 근거 마련(신설) 1. 제3의료기관을 통한 자문의뢰 절차 등에 대한 설명 의무화(제2-34조의2 신설) - 보험수익자가 의료자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료기관을 통해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추가적인 자문의뢰가 가능함을 계약자에게 설명토록 규정 - 또한, 제3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자문 의뢰시 의뢰내용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및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자료내역, 의료자문 완료시 자문의견도 설명토록 규정(단, 보험계약자 등이 제3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의견을 직접 설명받은 경우에는 설명 불필요) 2. 의료자문 관련 보험협회 비교·공시 근거 마련(제5-11조의2 관련, 별표 1의1 개정) - 보험협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회사별 의료자문 건수,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및 일부지급 건수·비율 등을 반기별로 비교·공시토록 개선	
10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	1.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거주의무기간 지정(신설) ○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을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으로 함. - 공공택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이상 100%미만인 경우 3년 - 민간택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3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이상 100%미만인 경우 2년 2.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전매제한 강화(강화)	1.비중요 2.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대상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	
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금융위원회)	1.소비자신용관련업자의 허가 및 등록요건 등(강화) - 채권수탁추심업 허가요건으로 사회적 신용 요건, 영업보증금 예치의무 추가(제6조) - 신설되는 채무조정교섭업을 포함한 4개 등록업(대부업, 대부중개업, 채권매입추심업, 채무조정교섭업)의 등록요건 정비(제10조) * 비영리법인 채무조정교섭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요건 적용 - 대부업자 등의 등록 취소시 거래종결방법 규정(제64조) 2.소비자신용관련업자의 업무범위 및 업무준칙(강화) - 이해상충 있는 업무 간 겸영을 금지하고, 가능한 부수업무를 규정(제18조) -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채권 매입대금의 담보조달비율이 7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제19조) - 소비자신용관련업의 상호 관련 의무 부과(필수문자 상호 포함 의무, 제20조) - 소비자신용관련업자의 이용자 보호기준 마련 및 보호감시인 선임의무 의무화(일부 소규모 등록업자 등 제외, 제21조)	1.중요 2.중요 3.비중요 4.중요 5.중요 6.중요 7.비중요 8.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3.연체채권에 대한 주요 처분 전 의무적 채무조정 절차 및 연체이자제한(신설) -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 상실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조정 신청 기회 등을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하며, 채무조정 요청시 채무조정 심사기간 중 기한의 이익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제29조)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채권중 당초 약정에 따른 상환일이 도래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고, 만약 약정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약정 체결시 해당 연체가산이자를 무효로 하도록 규정(제30조) - 기한의 이익 상실 채권을 매각하려는 경우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조정 신청 기회 등을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하며, 채무조정 심사기간 중 채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제32조) - 일정 주택의 경매를 신청하려는 경우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조정 신청 기회 등을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하며, 채무조정 심사기간 중 경매를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제37조) 4.개인채권의 양도절차 및 원채권자의 책임 강화(신설) - 모든 채권금융기관이 채권매입추심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만 개인채권을 양도하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도록 하고, 채권매입추심업자는 미등록 대부업자, 채권매입추심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이를 추심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채무자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채권의 양도를 금지 - 연체된 개인채권의 양수인이 해당 채권을 재양도하려는 경우 원채권 금융기관의 동의 필요 - 금융회사가 상각채권 양도시, 양도 전까지 추가 이자 부과 중단(이상 제31조) - 일정 연체채권 매각시 채권양수업체 평가를 의무화하고, 양도 이후에도 양수인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양수인의 위법행위 발견시 금융위에 보고(점검의무 위반시 원채권금융기관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 제33조) - 채권금융기관은 임직원이 채권양도 업무 수행시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 5.채권추심의 절차 및 방법, 위탁의 제한(강화) - 추심을 통한 채권회수 금지 채권 규정 및 추심 착수 예정일 3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 대한 추심관련 정보 통지의무 부과(제35조) - 채권추심자의 채권추심법 준수의무를 명확화 하고, 추심연락의 총량(채권별 1주일 7회) 제한 및 연락제한요청권 규정(제36조) -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수탁추심업자에 채무조정업무를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법, 부당 추심행위가 발견될 경우 계약취소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도록 규정(제38조) - 채권금융기관은 위탁예정일 5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 통지해야 하고, 추심업자 선정시 필수 고려요소를 반영하여 평가하는 한편, 사후적으로 추심업자의 불법추심 여부 점검 및 위법행위 발견시 금융위 보고 의무 부과(제39조) -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마련 의무화(제40조) -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업무수행자, 재위탁범위, 금지사항 등 신용정보법에서 이관(제41조) 6.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기회 부여 의무화 및 개인채권의 소멸시효(신설) -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을 권리로 보장하고 절차 규율(제44조) -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조정 심사절차 명문화(제45조) -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 내부기준 마련의무 부과(제46조) - 채권금융기관의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 마련의무 및 관련 절차 규율(제51조) 7.채무조정교섭업자의 영업행위 규제(신설)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신의성실 의무 규정(제47조) -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성실의무 규정(제48조) - 채무조정교섭업자가 수취 가능한 수수료 관련 제한 규정(제49조) - 기타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제50조) 8.제재 및 손해배상책임의 강화(강화) - 소비자신용법 제정으로 신용정보법에서 이관된 채권주심회사에 대한 행정제재를 규정하고, 소비자신용법의 의무수범주체로 추가된 채권금융기관 일반에 대해서도 행정제재 신설 (제62조) - 기존 대부업법상 대부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 관련 사항을 소비자신용법에서 준용하고, 금번에 신설된 채무조정교섭업까지 등록대상 소비자신용관련업에 공통적용(제63조) - 소비자신용법에 따른 의무수범주체가 법위반으로 금융소비자에 손해 발생시,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제68조)과 법정손해배상(제69조)을 규정하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위해 영업보증금 마련 의무대상 확대(제70조)	
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고압수소시설에 연결된 저압수소시설의 안전관리 강화(강화) 고압 수소시설과 연결된 저압 수소시설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고압가스설비 범위에 포함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하여, 허가, 기술검토, 검사를 실시 2.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제공 근거 마련(신설) 가스 누출, 안전장치 작동 등의 이상사태 발생 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이중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가스누출검지기, 화염검지기, 긴급차단장치 등 3.튜브트레일러 저장용기 연결배관 및 고정프레임 안전기준 마련(신설) 튜브트레일러의 안전확보를 위해 저장용기 간 연결배관 및 고정 프레임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 (연결배관) 배관의 재료, 강도 및 두께, 내압성능·기밀성능, 안전밸브 등 필요설비 및 조치, 교체 및 재연결시 기준 등, (고정프레임) 프레임 및 그 부속품의 강도 및 내구성, 배관 및 부속품에 대한 보호구조 등	
13	어선설비기준 개정안 (해양수산부)	1.소화기의 유효기간(신설) 육상의 분말소화기를 어선에서 사용토록 허용('20.2.3)함에 따라, 육상에서 정하고 있는 분말소화기의 유효기간 10년을 어선에도 동일하게 적용 2.단독경보형감지기 기준 및 선내 화재대비(신설) 10톤 이상 어선의 화재발생시 선내 어디서든 화재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타실, 기관실, 선원실 및 조리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실에 각 1개의 경지기를 설치하되, 기관실은 소음을 감안 시각경보기 추가 설치 3.중단파대 무선전화 및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 기준 및 설치 의무화(신설) 「수산업법」에 따른 근해어선(의무, 현존선 포함)에 '중단파대 무선전화 및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장치(디지털 선택호출장치 포함)' 설치의무 신설 4.원격조난경보발신장치 기준 및 설치(신설) 선원이 선원실에서 휴식·취침하거나, 조타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접근이 어려울 경우 조난버튼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선원실에도 추가 설치(10톤 이상)	
14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	1. 수입물품 국내 유통이력 신고(강화) 유통이력 대상물품 11개 (재)지정(지정기간 연장) - 신규지정(10개품목) : 당귀(식품용), 지황(식품용), 작약(식품용), 에이치(H)형강, 자동차 휠, 플랜지, 연석, 모피의류, 양파(신선·냉장), 냉동마늘 - 재지정(1개품목) : 냉동고추 ※ 지정기간 : 2021.2.1. ~ 2022.7.31	1.비중요
1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인증신청, 유효기간 연장 및 인증취소(신설) ○ (대상품목) 배추김치(1개품목) - 수입량 상위 해외제조업소부터 단계적 적용('22~'26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년) ○ (인증절차) 신청서 접수, 서류・현장 평가, 인증 변경(연장) 등에 관한 절차적 사항 규정 - (변경) 인증사항 중 '중요관리점' 변경 시 변경인증 신청 * 중요관리점: 위해방지·제거를 통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단계 - (연장) 유효기간(3년) 종료 120일 전까지 연장신청 ○ (사후관리) 필요시 HACCP 준수여부 등 조사·평가 실시 ○ (제재조치) 인증취소 등 제재기준 규정 - (사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조사·평가거부·방해·기피, HACCP 미준수, 해외제조업소 등록취소 등	